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종호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장래 수요를 사전에 조사, 민간에 공개함으로써 공공 수요를 예측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상용소프트웨어 개발을 유도하고, 공공의 민간소프트웨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요예보 조사에 정보화전략계획 및 그 대상 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처 협의 전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2. 11. 21. ~ 12. 12.) 예정

2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전

대통령령 제 호

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 중 “추진계획”을 “추진계획(국가재정법 제29조의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전 수립하는 계획 및 그 대상 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 보)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 41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와 소프트웨어사업의 <u>추진계획</u> 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 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국 가기관등의 장은 종합관리체계 를 통하여 소관 기관의 상용소 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 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 할 수 있다. 1. 해당 연도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 사업의 추진계획: 매년 2월 말 일 2. 다음 연도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	제34조(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 보)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 41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와 소프트웨어사업의 <u>추진계획</u> (국가재정법 제29조의 예산안편 성지침에 따라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전 수립하는 계획 및 그 대상 사업의 추진 계획을 포함한다.)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국가 기관등의 장은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 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 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. (현행과 같음) (현행과 같음)

사업의 추진계획: 매년 10월 3 1일	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334